2018.7.26.(목) 10:00
제19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의회운영위원회

전문위원 윤 여 창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51호

2018. 7. 26.

건 명	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(의회사무국)		
제안 및 제출자	조배식의원 외 4명	제안연월일	2018. 7. 12.
소 관 위 원 회	의회운영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7. 12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의원이 신체적·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·기구·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 ~제2조)

나. 의장의 책무 (안 제3조)

-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 마련
-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,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

다.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범위 (안 제4조)

-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
-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
- 의정활동 보조기구·보조 서비스의 제공 등

라. 지원신청 및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등 (안 제5조 ~ 제6조)

- 보조인력을 지원 받고자하는 의원은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하여야 함
-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며, 계약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함

□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제정안은 중증장애의원이 신체적·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·보조기구·보조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을 도모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현행「지방자치법」에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 장애유무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,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14조,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, 제11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과 장애인이 해당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,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입법형식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